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당 기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전 기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가립회계법인  
GARIB & COMPANY

# 목 차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별첨  
대차대조표 ..... 2

별첨  
운영성과표 ..... 3

별첨  
수지결산서 ..... 5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8

부속명세서

별첨  
구분 대차대조표 ..... 12

별첨  
구분 운영성과표 ..... 13

건의사항 16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 사 회 귀 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수지결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이사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200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제일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08년 1월 24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법인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 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의 내용을 법인의 정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립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최 상 훈 · 박 개 성



2009년 1월 1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09년 1월 1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대 차 대 조 표

제 18기 2008 년 12 월 31일 현재

제 17기 2007 년 12 월 31일 현재

단체명 :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단위 : 원)

	당 기		전 기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b>I. 자산</b>				
<b>1. 유동자산</b>		61,218,903		89,680,013
가. 당좌자산		61,218,903		89,680,013
(1) 현금		558,430		875,940
(2) 예금		56,066,143		82,819,513
(3) 미수금		-		1,249,140
(4) 선급금		-		612,100
(5) 선납세금		594,330		123,320
(6) 단기대여금(주석5)		4,000,000		4,000,000
<b>2. 고정자산</b>		125,580,349		86,229,888
가. 사용제한자산(주석3)		63,445,129		28,173,308
(1) 간사연수적립금		269,010		269,010
(2) 퇴직적립금		-		24,497
(3) 기본금적립금		45,374,888		27,579,801
(4) 기타보증금		300,000		300,000
(5) 보금자리적립금		10,001,231		-
(6) 영상사업적립금		7,500,000		-
나. 유형자산		62,135,220		58,056,580
(1) 차량운반구(주석4)		6,000,000		5,000,000
(2) 비품		56,135,220		53,056,580
<b>자 산 총 계</b>		<b>186,799,252</b>		<b>175,909,901</b>
<b>II. 부채</b>				
<b>1. 유동부채</b>		3,210,497		1,095,041
(1) 미지급금		1,654,180		901
(2) 예수금		1,556,317		1,094,140
<b>2. 고정부채</b>		23,043,601		22,697,463
(1) 장기차입금(주석6)		20,000,000		20,000,0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043,601		2,697,463
<b>부 채 총 계</b>		<b>26,254,098</b>		<b>23,792,504</b>
<b>III. 순자산</b>				
<b>1. 기본금(영구적 제약)</b>		45,000,000		45,000,000
(1) 설립기본금		45,000,000		45,000,000
<b>2. 잉여금(무제약)</b>		115,545,154		107,117,397
(1) 잉여차액		115,545,154		107,117,397
(순자산증감 당기 : 8,427,757 전기 : 109,120,936)				
<b>순 자 산 총 계</b>		<b>160,545,154</b>		<b>152,117,397</b>
<b>부채와순자산총계</b>		<b>186,799,252</b>		<b>175,909,901</b>

## 운 영 성 과 표

제18기 : 2008년 01월 0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제17기 : 2007년 01월 01일 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단체명 :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단위 : 원)

<b>I. 사업수익</b>		<b>373,239,840</b>		<b>534,958,482</b>
<b>1. 회비</b>		<b>152,837,400</b>		<b>143,246,230</b>
(1) 회원회비	115,907,400		123,909,230	
(2) 이사회비	17,710,000		13,977,000	
(3) 지역회비	19,220,000		5,360,000	
<b>2. 일반후원금</b>		<b>122,880,000</b>		<b>134,334,000</b>
(1) 교회,기관후원금	122,530,000		132,116,000	
(2) 감사후원금	350,000		548,000	
(3) 현물후원금	-		1,670,000	
<b>3. 특정후원금</b>		<b>93,272,440</b>		<b>254,568,252</b>
(1) 개인후원금	4,056,000		6,418,000	
(2) 특정목적후원금	89,216,440		248,150,252	
<b>4. 사업수입</b>		<b>4,250,000</b>		<b>2,810,000</b>
(1) 사업후원금	600,000		1,820,000	
(2) 등록비	3,650,000		990,000	
<b>II. 사업비용</b>		<b>369,782,480</b>		<b>426,512,432</b>
<b>1. 인건비</b>		<b>64,350,792</b>		<b>55,123,972</b>
(1) 급여및상여	52,735,000		44,650,000	
(2) 협동간사사례비	2,600,000		1,700,000	
(3) 퇴직급여	9,015,792		8,773,972	
<b>2. 사무관리비</b>		<b>54,222,508</b>		<b>59,329,576</b>
(1) 통신비	2,939,460		3,919,984	
(2) 교통비	2,796,990		807,700	
(3) 소모품비	1,119,060		1,546,790	
(4) 사무인쇄비	1,348,176		561,700	
(5) 운반비	55,000		-	
(6) 보험료	798,670		-	
(7) 지급수수료	6,859,527		5,721,781	
(8) 제세공과금	263,530		577,620	
(9) 수도광열비	1,533,200		2,973,100	
(10) 지급임차료(주석7)	15,840,000		23,210,000	
(11) 발송비	2,576,680		1,984,750	
(12) 복리후생비	12,804,350		12,488,341	
(13) 봉사자관리비	1,335,500		442,400	
(14) 유지보수비	3,952,365		5,095,410	
<b>3. 사업비</b>		<b>251,209,180</b>		<b>312,058,884</b>
<b>가. 사업인건비</b>		<b>81,507,500</b>		<b>71,565,850</b>
(1) 사업급여및상여금	58,087,500		48,726,210	
(2) 기타사업인건비	23,420,000		22,839,640	

운 영 성 과 표, 계속

제18기 : 2008년 01월 0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제17기 : 2007년 01월 01일 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단체명 :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단위 : 원)

나. 사업행사비		70,199,728		162,289,284
(1) 회의비	4,857,562		4,479,754	
(2) 행사비	49,393,800		143,351,340	
(3) 교육행사비	5,405,210		2,748,190	
(4) 회원사업비	181,800		1,931,400	
(5) 대외행사분담금	10,361,356		9,778,600	
다. 홍보사업비		46,733,728		39,613,680
(1) 소식지제작비	5,391,808		5,286,730	
(2) 웹운영비	17,247,500		10,879,600	
(3) 도서자료제작비	7,804,620		9,683,800	
(4) 홍보물제작비	15,260,300		10,334,600	
(5) 홍보비	1,029,500		3,428,950	
라. 교육훈련비		27,084,459		11,557,984
(1) 간사훈련비	25,502,780		9,324,020	
(2) 자료구입비	1,581,679		2,233,964	
마. 지역사업비		25,683,765		24,933,860
(1) 지역간사지원금	6,864,335		5,987,540	
(2) 지역사업비	141,770		645,970	
(3) 전국간사사업비	241,520		12,252,350	
(4) 지역지원금	18,436,140		6,048,000	
바. 기금		-		2,098,226
(1) 발전사업	-		2,098,226	
III. 사업이익		3,457,360		108,446,050
IV. 사업외수익		11,529,262		2,424,542
(1) 이자수익	5,634,471		1,065,336	
(2) 자료판매비	617,000		8,000	
(3) 노동부지원금	1,922,790		1,200,000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2,697,463		-	
(5) 잡수입	657,538		151,206	
V. 사업외비용		6,558,865		1,749,656
(1) 유형자산처분손실	3,230,000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3,043,601		1,065,336	
(3) 잡지출	285,264		684,320	
VI. 당기 순자산의 증(감)		8,427,757		109,120,936

## 수 지 결 산 서

제18기 : 2008년 01월 0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제17기 : 2007년 01월 0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단체명 :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단위 : 원)

계정과목	제18기	제17기
<b>&lt;수입&gt;</b>		
<b>I. 사업수익</b>	<b>373,239,840</b>	<b>534,958,482</b>
<b>1. 회비</b>	<b>152,837,400</b>	<b>143,246,230</b>
(1) 회원회비	115,907,400	123,909,230
(2) 이사회비	17,710,000	13,977,000
(3) 지역회비	19,220,000	5,360,000
<b>2. 일반후원금</b>	<b>122,880,000</b>	<b>134,334,000</b>
(1) 교회,기관후원금	122,530,000	132,116,000
(2) 간사후원금	350,000	548,000
(3) 현물후원금	-	1,670,000
<b>3. 특정후원금</b>	<b>93,272,440</b>	<b>254,568,252</b>
(1) 개인후원금	4,056,000	6,418,000
(2) 특정목적후원금	89,216,440	248,150,252
<b>4. 사업수입</b>	<b>4,250,000</b>	<b>2,810,000</b>
(1) 사업후원금	600,000	1,820,000
(2) 등록비	3,650,000	990,000
<b>II. 사업외수익</b>	<b>8,831,799</b>	<b>2,424,542</b>
(1) 이자수익	5,634,471	1,065,336
(2) 자료판매비	617,000	8,000
(3) 노동부지원금	1,922,790	1,200,000
(4) 잡수입	657,538	151,206
<b>III. 기타</b>	<b>6,155,193</b>	<b>72,396,985</b>
(1) 미수금의 회수	1,249,140	-
(2) 선급금의 사용	612,100	-
(3) 선납세금의 환급	-	369,600
(4) 기윤실적립금의 사용	-	21,661,975
(5) 퇴직적립금의 사용	24,497	-
(6) 차량운반구의 처분	1,770,000	-
(7) 비품의 처분	384,000	-
(8) 미지급금의 발생	1,653,279	-
(9) 예수금의 발생	462,177	365,410
(10) 장기차입금의 발생	-	50,000,000
<b>IV. 전기이월</b>	<b>83,695,453</b>	<b>15,139,612</b>
(1) 현금	875,940	294,850
(2) 예금	82,819,513	14,844,762
<b>수입 합계</b>	<b>471,922,285</b>	<b>624,919,621</b>
<b>&lt;지출&gt;</b>		
<b>V. 사업비용</b>	<b>369,782,480</b>	<b>426,512,432</b>
<b>1. 인건비</b>	<b>64,350,792</b>	<b>55,123,972</b>

수 지 결 산 서, 계속

제18기 : 2008년 01월 0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제17기 : 2007년 01월 0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단체명 :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단위 : 원)

(1) 급여및상여	52,735,000	44,650,000
(2) 협동간사사례비	2,600,000	1,700,000
(3) 퇴직급여	9,015,792	8,773,972
<b>2. 사무관리비</b>	<b>54,222,508</b>	<b>59,329,576</b>
(1) 통신비	2,939,460	3,919,984
(2) 교통비	2,796,990	807,700
(3) 소모품비	1,119,060	1,546,790
(4) 사무인쇄비	1,348,176	561,700
(5) 운반비	55,000	-
(6) 보험료	798,670	-
(7) 지급수수료	6,859,527	5,721,781
(8) 제세공과금	263,530	577,620
(9) 수도광열비	1,533,200	2,973,100
(10) 지급임차료	15,840,000	23,210,000
(11) 발송비	2,576,680	1,984,750
(12) 복리후생비	12,804,350	12,488,341
(13) 봉사자관리비	1,335,500	442,400
(14) 유지보수비	3,952,365	5,095,410
<b>3. 사업비</b>	<b>251,209,180</b>	<b>312,058,884</b>
가. 사업인건비	81,507,500	71,565,850
(1) 사업급여및상여금	58,087,500	48,726,210
(2) 기타사업인건비	23,420,000	22,839,640
나. 사업행사비	70,199,728	162,289,284
(1) 회의비	4,857,562	4,479,754
(2) 행사비	49,393,800	143,351,340
(3) 교육행사비	5,405,210	2,748,190
(4) 회원사업비	181,800	1,931,400
(5) 대외행사분담금	10,361,356	9,778,600
다. 홍보사업비	46,733,728	39,613,680
(1) 소식지제작비	5,391,808	5,286,730
(2) 웹운영비	17,247,500	10,879,600
(3) 도서자료제작비	7,804,620	9,683,800
(4) 홍보물제작비	15,260,300	10,334,600
(5) 홍보비	1,029,500	3,428,950
라. 교육훈련비	27,084,459	11,557,984
(1) 간사훈련비	25,502,780	9,324,020
(2) 자료구입비	1,581,679	2,233,964
마. 지역사업비	25,683,765	24,933,860
(1) 지역간사지원금	6,864,335	5,987,540



수 지 결 산 서, 계속

제18기 : 2008 년 01 월 01 일 부터 2008 년 12 월 31 일 까지  
 제17기 : 2007 년 01 월 01 일 부터 2007 년 12 월 31 일 까지

단체명 :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단위 : 원)

계정명	17기	18기
(2) 지역사업비	141,770	645,970
(3) 전국간사사업비	241,520	12,252,350
(4) 지역지원금	18,436,140	6,048,000
바. 기금	-	2,098,226
(1) 발전사업	-	2,098,226
VI. 사업외비용	285,264	684,320
(1) 잡지출	285,264	684,320
VII. 기타	45,229,968	114,027,416
(1) 미수금의 발생	-	63,940
(2) 선급금의 발생	-	562,100
(3) 원천납부소득세액	471,010	-
(4) 기본금적립금의 적립	17,795,087	26,661,975
(5) 기타보증금의 취득	-	300,000
(6) 보금자리적립금의 적립	10,001,231	-
(7) 영상사업적립금의 적립	7,500,000	-
(8) 차량운반구의 취득	6,000,000	-
(9) 비품의 취득	3,462,640	5,407,920
(10) 미지급금의 결제	-	30,231,481
(11) 단기차입금의 결제	-	800,000
(12) 장기차입금의 상환	-	50,000,000
지출 합계	415,297,712	541,224,168
< 수지차액 >	56,624,573	83,695,453
< 차기이월 >		
(1) 현금	558,430	875,940
(2) 예금	56,066,143	82,819,513
합 계	56,624,573	83,695,453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8년 12월 31일 현재

### 1.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개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법인'이라 함)은 성경과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성경원리의 실생활 적용 및 정의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1991년 11월 11일 4,500만원의 기본재산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법인은 정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중요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후원금의 인식시기

- ① 법인은 현금이 예금계좌 또는 법인에 직접 입금될 때 동 금액을 후원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물로 제공되는 현물후원금은 기부 당시의 시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② 재단이 수령하는 후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회비: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
  - ii 일반후원금: 후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후원
  - iii 특정후원금: 후원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

#### 나) 유형자산

당기말 현재의 유형자산 금액은 매입 또는 기증받은 자산가액으로 법인은 자산의 사용중에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고 처분 또는 폐기 시점에 순실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중에 유형자산 중 차량운반구가 처분되었으며 유형자산의 증가분은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자산 취득입니다.

#### 다) 퇴직급여충당부채

법인은 1년 이상 근속한 간사들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퇴직연금 기여액 납부시 납부액을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라) 순자산의 분류

##### ① 기본재산(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법인은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총회 및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② 적립금(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 기부자가 사용용도나 사용시점에 대하여 일시적 제약을 제시한 순자산으로 제시된 제약조건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제약이 없는 순자산  
: 기부자가 사용용도나 사용시점에 대해 제약을 제시하지 않은 순자산으로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마) 회계단위

법인은 사업목적별 기금회계를 실시하며, 다음의 회계단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① 경사회계
- ② 사무실준비금회계
- ③ 윤리연구소회계
- ④ 사회복지위원회회계
- ⑤ 성경공부교재
- ⑥ 기윤실 기금회계
- ⑦ 생명윤리
- ⑧ 건강가정, 상담소
- ⑨ 부채상환
- ⑩ 간사교육지원회계
- ⑪ 정치실천컨퍼런스
- ⑫ 교회신뢰네트워크

3. 사용계약자산

당기말 현재 특정용도로만 그 사용에 제약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계 정 과 목	용 도	종 류	금 액	비 고
간사연수적립금	간사 연수	보통예금	269,010	경사회계
기본금적립금	기본재산 적립	CMA	45,374,888	경사회계
보금자리적립금	시설자금	CMA	10,001,231	경사회계
영상사업적립금	영상사업	CMA	7,500,000	경사회계

4. 차량운반구

당기말 현재 차량운반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차량번호	차 명	금 액	용 도
64보5085	마티즈	6,000,000	업무용

5. 단기대여금

당기말 현재 대여금 4,000,000원은 2004년 9월 8일에 공정연대에 운영비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입니다.

6. 장기차입금

당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20,000,000원은 1991년 9월 30일에 사단법인 아시안미션(전"아시안선교회")으로부터 사무실 전세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액입니다.

7. 약정사항

법인은 사무실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임차보증금은 없으나 동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1,320,000원의 임차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의사항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2008년 12월 31일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수지결산서를 감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선을 건의하오니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법인')의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은행조회서의 발송 및 통장관리

본 감사인은 법인이 거래하고 하고 있는 국민은행외 11개사에 은행조회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은행 조회서의 회신 결과 법인과 관련된 대출이나 지급보증 및 기타 다른 계약이 없음을 은행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인회계에 집계되지 않은 법인명의의 통장이 다수 회신되었습니다. 법인은 해당통장이 지역기윤실의 통장이거나 2007년에 독립된 라이프센터의 통장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역기윤실은 당 법인의 지점형태로 법인회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별도의 단체로 독립된 라이프센터의 통장은 해당 단체로 명의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당 법인 회계에 집계되지 않은 통장은 총 29개 계좌 20,523,968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은행명	계좌수	금액
하 나 은 행	8개 계좌	5,288,293
농 협	7개 계좌	3,834,929
국 민 은 행	5개 계좌	3,996,542
신 한 은 행	2개 계좌	7,171,368
우 리 은 행	6개 계좌	12,555
씨 티 은 행	1개 계좌	220,281
		20,523,968

## 2. 재무제표의 회계단위 보고

현재 법인은 소식지란에 회계보고사항을 포함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회계단위별로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각 회계단위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회계단위는 경상회계, 윤리연구소회계, 간사교육지원회계, 정치실천컨퍼런스 및 교회신뢰네트워크로 크게 구분됩니다.

법인의 회계보고는 특정목적에 위해 선별하여 보고되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 사업단위가 통합되어 보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회계만 공시됨에 따라 소식지에 보고된 기부액과 실제 기부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에 공시되는 회계보고는 특정회계단위가 제외됨이 없이 전체 사업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기간 일치

현재 법인은 격월로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회원 및 후원자에게 회계보고를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지 제작시점이 회계결산시점보다 먼저 이루어짐에 따라 소식지의 사업보고기간과 회계보고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결산시점을 앞당겨 소식지의 사업보고 기간과 회계결산 보고기간을 일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지역기운실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재 법인은 서울기운실외에 부산, 청주, 진주, 대전, 광주, 인천의 지역기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된 재무제표는 서울기운실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이며 지역기운실 회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기운실의 CMS후원금의 경우에는 서울기운실에 입금처리된 후 지역기운실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역기운실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도 서울기운실에서 발행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기운실 후원금중에서 서울기운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역기운실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해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기부금 영수증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 11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에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 76조 가산세 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및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기운실의 기부금은 모두 서울기운실을 통하여 수입 및 회계처리 되어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서울기운실에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 5. 회계상 급여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상이 및 지역간사의 갑근세등 대납

현재 법인은 서울기운실 직원의 급여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및 지급조서 제출시에는 울산, 부산, 광주, 청주 기운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까지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계상된 급여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총 급여액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사에 대한 급여 지급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사에 대한 국민연금등 법인 대납액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갑종근로소득세 등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국민연금등 법인대납액을 급여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인은 지역기운실의 열악한 자금상태를 고려하여 지역간사에 대한 급여액을 보조하고 있으나, 지역기운실의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기중에 보고된 바 없으며 실제 지역기운실에 후원되는 기부금액도 CMS후원금을 제외하고는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회계상 서울기운실과 지역기운실은 사단법인 기운실로 하나의 회계단위입니다. 지역기운실의 재무상황이 반영되어 회계보고서가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단위로 지역기운실의 수입 지출 내역이 서울기운실에 보고되어 통합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6. 예금계좌의 예금주 변경

현재 기운실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의 예금주를 검토해 보면 이미 퇴사한 직원명의의 통장을 법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개인후원금이 수입되는 통장으로 통장해지가 어렵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입금액이 소액임을 고려할 때 회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계좌변경을 요청하고 가능한한 법인이 거래하는 모든 계좌는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 7. 장기차입금의 상환

법인의 1998년 2월 6일자 공문에 따르면 법인은 1991년 9월 30일에 사단법인 아시안미션(전 "아시안 선교회")으로부터 23,000천원을 차용하여 전세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10월 15일 공문에 따르면 사단법인 아시안미션은 이전에 법인에 대여금 상환 요청을 하여 2000년 예산에서부터 대여금 상환을 목표로 책정하여 소액씩이라도 상환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기말 현재 사단법인 아시안미션으로부터 차입금잔액 20,000천원이 상환되지 않아 오랫동안 자금관계가 청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사단법인 아시안미션과 협의하여 차입금의 상환여부 및 채무면제를 논의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8. 예결산서의 작성

비영리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 초에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고 있으나, 회계연도중 비용 지출시 예산대비 집행실적을 비교분석하는 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 다양화로 인하여 최초 제출 예산과 실제 집행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예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예결산서는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및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연도중에 사업이 추가 및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쳐 자금을 집행하여야 합니다.